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정	2000. 6. 26
개정	2000. 8. 17
개정	2001. 4. 20
개정	2001. 12. 26
개정	2002. 11. 06
개정	2002. 12. 21
개정	2003. 3. 29
개정	2003. 11. 04
개정	2003. 12. 10
개정	2004. 3. 2
개정	2004. 5. 25
개정	2004. 12. 31
개정	2005. 8. 5
개정	2005. 12. 23
개정	2006. 6. 22
개정	2006. 9. 14
개정	2006. 12. 28
개정	2007. 8. 13
개정	2007. 10. 11
개정	2007. 11. 7
개정	2007. 12. 31
개정	2008. 11. 13
개정	2009. 2. 12
개정	2009. 10. 8
개정	2009. 12. 3
개정	2010. 12. 16
개정	2011. 8. 11
개정	2012. 3. 15
개정	2012. 4. 12
개정	2012. 8. 2
개정	2013. 1. 10
개정	2013. 2. 14
개정	2013. 12. 05
개정	2014. 10. 21
개정	2015. 12. 28
개정	2016. 6. 15
개정	2016. 12. 16
개정	2016. 12. 16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5. 26

개정 2018. 3. 2.
개정 2018. 5. 25.
개정 2018. 8. 2.
개정 2019. 2. 7.
개정 2019. 2. 20.
개정 2020. 8. 14.
개정 2020. 12. 4.
개정 2021. 3. 25.
개정 2021. 9. 28.
개정 2022. 2.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직제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구성원

제4조(구성) 공단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두며, 선임 및 직무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2001.12.26>

제5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공무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의 직급은 3급부터 7급으로 하며, 기능직의 직급은 1급부터 5급으로 구분한다.<삭제 2001.12.26>[본조신설 2021.9.28.]

제6조 삭제<2001.12.26>

제7조 삭제<2001.12.26>

제3장 조직

제8조 삭제 <2001.12.26>

제9조(직위) ① 부장은 일반3급으로 보하고 팀장은 일반4급부터 일반5급까지 또는 기능1급부터 기능2급까지 보한다. <개정2001·4·20, 2001·12·26, 2005·8·5, 2006·6·22, 2007·10·11, 2010·12·16, 2012·8·2, 2014·10·21, 2016.6.15., 2017.5.26.>

② 직위공모제로 보직을 선발할 경우에는 직급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2016.6.15.>

제10조(정수) ① 공단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기간이 한시적인 사업의 수행 인력과 신규 사업 수탁으로 인한 법정 필수 인원은 계약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2001·12·26, 2001·12·21, 2003·3·29, 2003·12·10, 2005·12·23> <별표개정 2021.9.28.>

② 공단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정원 내 별도직군으로 편성하고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1.>

제11조(직무분장) 공단의 직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본조신설 2017.5.26.]

제4장 삭제 <2017.5.26.>

제11조 삭제 <2014·10·21>

제12조 삭제 <2017.5.26.>

제13조 삭제 <2017.5.26.>

제14조 삭제 <2017.5.26.>

제15조 삭제 <2017.5.26.>

제16조 삭제 <2017.5.26.>

제17조 삭제 <2017.5.26.>

제18조 삭제 <2017.5.26.>

부 칙<2000-6-2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 3 ·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 11 ·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 12 ·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 3 ·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이 규정 시행당시의 다른 규정 중 “청소 운영팀”은 “경영사업팀”으로 하고 “청소업무”를 “환경업무”로 한다.

부 칙<2004 · 8 ·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 12 ·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 8 ·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이 규정 시행당시의 다른 규정 중 “담당”은 “팀장”으로, “팀장”은 “부장”으로 하고 “총무운영팀”

을 “총무부” 로 “총무기획담당” 을 “총무혁신팀” 으로, “경영사업팀” 을 “경영사업부” 로 “경영관리담당” 을 “경영관리팀” 으로 “환경관리담당” 을 “환경관리팀” 으로 한다.

부 칙<2005·12·23>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이 규정 시행당시의 다른 규정 중 “총무부” 를 “기획전략팀” 으로 “경영사업부” 를 “사업부” 로, “총무혁신팀” 을 “경영지원팀” 으로 “경영팀” 을 “시설팀” 으로 “환경관리팀” 을 “환경팀” 으로 한다.

부 칙<2006·9·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1>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이 규정 시행당시의 다른 규정 중 “기획전략팀” 을 “경영지원팀” 으로 “사업부” 를 “고객지원팀” 으로 하며, “경영지원팀” 을 “행정지원담당” 으로, “시설팀” 을 “문화체육지원담당”으로, “환경팀” 을 “생활환경지원담당”으로 한다.

부 칙<2007·1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이 규정 시행당시의 다른 규정 중 “경영지원팀” 을 “경영팀” 으로 “고객지원팀” 을 “환경팀” 으로 한다.

부 칙<2009·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이 규정 시행당시의 다른 규정의 서식 중 결재란에 대하여 “담당” 란을 “실무자” 란으로 하고 “실무자” 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부 칙<2011·8·1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15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1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5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1 >

제1조(시행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이 규정 시행당시의 다른 규정의 서식 중 결재란에 대하여 “본부장” 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부 칙<2015. 12. 28.>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이 규정 시행 당시의 다른 규정의 서식 중 결재란에 대하여 “팀장” 란과 “이사장” 란 사이에 “부장” 란을 삽입한다.

부 칙<2018. 3.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 정수표에서 감원된 공무원 3명에 대하여, 기능직 3명의 채용이 완료된 시점(2022년 2월 28일)까지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2.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2001.4.20., 2001.12.26., 2002.11.6., 2002.11.6., 2003.3.29., 2003.12.10., 2004.3.2., 2004.8.25., 2004.12.31., 2005.8.5., 2005.12.23., 2006.6.22., 2006.9.14., 2006.12.28., 2007.8.13., 2007.10.11., 2007.11.7., 2007.12.31., 2008.11.13., 2009.2.12., 2009.10.8., 2009.12.3., 2011.8.11., 2012.3.15., 2012.8.2., 2013.1.10, 2013.12.5., 2014.10.21, 2016.6.15., 2016.12.29., 2017.5.26., 2018.3.2., 2018.5.25., 2019.2.7., 2019.2.20., 2020.8.14., 2021.3.25. 2021.9.28., 2022.2.4.>

정 수 표

직급별	직렬별	합계
계		275
임원		1
일반직 소계		30
3급	행정	1
4급	행정	6
5급	행정	7
6급	행정	6
7급	행정	10
기능직 소계		103
1급	시설	1
	운전	2
2급	시설	5
	운전	5
	생활체육지도자	1
3급	시설	8
	운전	12
	생활체육지도자	2
4급	시설	10
	운전	8
	생활체육지도자	3
5급	시설	23
	운전	13
	생활체육지도자	10
공무직 소계		141
공무직	환경미화원	105
	사무보조원	4
	시설관리원	31
단시간공무직	시설관리원	1
<삭제>	<삭제>	<삭제>

[별표2] <신설2017.5.26.><개정2018.8.2.2,019.2.20, 2020.8.14., 2020.12.4., 2021.9.28.>

직 무 분 장 표

감사평가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 감사 2. 윤리·인권경영 추진 3. 평가업무 총괄 (경영평가, CEO성과평가, 내부평가) 4. 이사장지시사항 5. 경영공시 6. 이사장수행
경영 사업부	경영기획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운영에 관한 기획조정 및 보고서 작성 2. 중장기경영계획(전략) 및 연간사업계획 3. 심사분석 및 경영분석 4. 조직, 정원관리 및 각종 제도개선 5. 고객만족, 홍보 6. 예산의 편성 및 배정, 회계 및 결산 7. 규정, 이사회 운영 8. 임직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9. 복무(근태) 관리 10. 교육 및 복리후생 11. 문서 및 직인관리 12. 보안 및 비상계획 수립시행 13. 물품 및 재산관리 14. 노동조합관련업무 및 노무관리 15. 산업안전보건관리 16. 제안제도 운영 17. 전산관리, 홈페이지 관리 18. 민원사무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9. 신규사업 추진 및 수탁사업 재계약 20.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시설운영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2. 안성시체육관 운영관리 3. 국제정구장 운영관리 4. 안성맞춤구장(인조잔디 야구장 및 축구장) 운영관리 5. 시설물 프로그램 개발·운영 6. 대관수입관리 및 수입증대방안 7.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8.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경영 사업부	사업운영팀	1.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2. 시설물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방안 4.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고객맞춤팀	1. 사계절썰매장 운영관리 2. 안성시캠핑장 운영관리 3.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4. 안성주모공원 운영관리 5. 시설물 프로그램 개발·운영 6.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방안 7.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재활용사업팀	1.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2. 재활용판매 및 수입금관리 3. 신규거래처 개발 및 발굴 4. 환경안정화시설 운영관리 5. 공동주택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환경관리팀	1.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2. 가로청소 및 공동주택음식물 수거 3. 차량운행 및 장비관리 4.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관리 5.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자원회수팀	1. 폐기물 소각 2.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3.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